의안 번호	95

2026. 10.

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

창원시

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
공공기관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5

제출년월일 : 2026. 10. 16.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이유

2027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고자, 「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· 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상정안건 : 1건

대상기관	사업건수	위탁 · 대행 예정규모	비 고
창원산업진흥원	1개 사업	2,137백만원(시비)	

3. 관련법령

가. 「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」 제17조(업무의 위탁)
나. 「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(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)

4. 주요내용

가. 2027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공공기관 위탁·대행 사업(안)

수탁 · 대행 공공기관	사 업 명	위탁 · 대행 기간	위탁 · 대행 예 정 액
(재)창원산업진흥원	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	2년 ('27. 1.~ '28. 12.)	2,137백만원(시비)

나. 수탁·대행 공공기관 현황

❍ (재)창원산업진흥원 (원장 직무대리 김종호)

- (소 재 지)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
- (설 립 일) 2015. 5. 19.
- (인력/조직) 정원 61명 / 1실 2본부 10팀 1센터 2TF팀
- (설립목적)
  - ◦ 창원시 산업의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서비스 제공
  - ◦ 창원국가산단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전략산업과 첨단산업기술 중심의 기업 인프라 구축
  - ◦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ONE-STOP SYSTEM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확보
- (주요사업)
  - ◦ 창원시 경제·산업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
  - ◦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성과관리, ESG 경영 추진
  - ◦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
  - ◦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사업
  - ◦ 창원형 디지털전환 지원사업
  - ◦ Buy R&D 기술이전 지원사업
  - ◦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및 저변확대 지원
  - ◦ 방위·항공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
  - ◦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
  - ◦ 드론 및 AAM 핵심수요기술 국산화 개발 지원
  - ◦ 2026년 창원시 수소인프라 운영사업
  - ◦ 수전해 기반 35MPa급 S-HRS 시스템 개발 및 실증
  - ◦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
- (경영평가)
  - ◦ 2025년 창원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: 나 등급(85.91점)
  - ◦ 2024년 창원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: 나 등급(86.63점)

사업명	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

□ 공공기관 위탁·대행 대상 사무 현황

- ❍ 사 업 명: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
- ❍ 사업기간: 2027. 1. ~ 2030. 12. (제5대 임기)
- ❍ 지원대상: 1,000명 ※ '27년 200명 ▲'28년 230명 ▲'29년 270명 ▲'30년 300명
  (기업) 관내 소재 기업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종료된 기업
  (청년) 관내 사업장 근무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(18개월, 24개월) 대상 청년
- ❍ 소요예산: 4,968백만원 (시비, 4년간)
- ❍ 사업내용: 국비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) 연계사업으로 기업·청년에게 고용유지장려금·지역정착금 지원
  (기업) 고용유지장려금 360만원 지원(월 30만원 × 12개월)
  (청년) 지역정착금 120만원 지원(월 10만원 × 12개월)

□ 위탁·대행범위 및 내용

- ❍ 위탁사업명: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
- ❍ 위탁기간: 2년, 2027. 1. ~ 2028. 12.
- ❍ 위탁방법: 공공기관 위탁
- ❍ 위탁사무 범위
  -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·홍보
  -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·관리
  - 사업 신청 접수, 심사 및 지원 대상 선정
  - 근로·고용 유지 여부 확인 및 지원금 지급
  - 사업비 정산,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
  - 민원 대응 및 사업 실적·성과보고서 작성 등 사업 운영 전반
- ❍ 수탁기관: (재)창원산업진흥원

❍ 사업금액: 2,137백만원(시비)

예 산 항 목			사 업 비(천원)		세 부 내 역
			‘27년	‘28년	
직접비	민간사업 지 원 비	기 업 지원금	720,000	828,000	■ 기업지원금 - 고용유지장려금 : 3,600천원 X 430명
		청 년 지원금	240,000	276,000	■ 청년지원금 - 인센티브 : 1,200천원 X 430명
	일 반 운 영 비	사 무 관리비	3,000	3,000	■ 회계정산 수수료 등 - 회계정산 수수료 : 3,000천원 X 2회
		회의비	600	600	■ 회의운영비 - 회의운영비 : 300천원 X 4회
	인 건 비	보 수	27,746	32,309	■ 사업수행 인건비
간 접 비			2,654	3,091	■ 사업운영지원 간접경비 - 민간사업 지원비의 약 0.28%
합 계			**994,000**	**1,143,000**	

※ 운영비 등 경비는 민간사업지원비의 3.5% 수준으로 산정

※ 연도별 세부 산출내역 등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 가능

<연간 지원인원 및 사업비 현황>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 분	계	‘27년	‘28년	‘29년	‘30년	비고
지원인원	**1,000**	200	230	270	300	
총사업비	**4,968**	994	1,143	1,341	1,490	※ 소요예산 산출(年 기준)
(기 업)지원금	**3,600**	720	828	972	1,080	(기업) 30만원 × 12개월
(청 년)지원금	**1,200**	240	276	324	360	(청년) 10만원 × 12개월
(수행기관)운영비	**168**	34	39	45	50	(운영비)사업비의 약 3.5%

※ 지원인원 등은 예산 반영액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공공기관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❍ 추진근거

- 「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제5조(사업) 및 제17조(업무의 위탁)
- 「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(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)

❍ 필 요 성 (전문성 및 효율성)

- 본 사업은 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,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 국비 사업 연계 추진으로 관련 운영기관과의 협업 등 복합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
- 공공기관인 (재)창원산업진흥원은 '23~'26년 신산업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, '25~'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참여기업 모집·심사·선정, 지원금 지급·관리, 사업비 정산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
- 또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속적·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, 청년희망금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(재)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

□ 공공기관 위탁·대행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

검토항목	검토결과
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 운영 가능성	◦ 다른 사무방식의 존재가능성 정도 : 낮음 ◦ 다른 사무방식으로 대체가능성 정도 : 낮음 - 관계기관 협업 등 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많고,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된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·운영 적정 ◦ 타 부서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(통합가능성) 여부 : 없음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◦ 공공서비스로서의 중요성 정도 : 중요 ◦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의 광범위성 정도 : 중요 ◦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정도 : 적정 - 창원산업진흥원은 상시 전문인력과 자체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적·안정적 서비스 공급 가능 - 시는 사업 지도·점검·성과평가를 통해 공공성·안정성을 보장
③ 경제적 효율성	◦ 업무담당 예산의 절감 정도 : 적정 ◦ 업무담당 공무원(인력)의 절감 정도 : 적정 - 창원산업진흥원은 상시 전문인력 배치와 전문지식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활용으로 비용 절감,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

검토항목	검토결과
④ 공공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◦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필요성 정도 : 적정 ◦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정도 : 적정
⑤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	◦ 위탁·대행 성과의 측정 용이성 정도 : 적정 ◦ 위탁·대행 성과의 계량적 측정 가능성 정도 : 적정 - 「창원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사무의 성과 측정이 용이함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◦ 위탁·대행 관리의 용이성 정도 : 적정 - 「창원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지도·감독)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한 검사가 용이 ◦ 위탁·대행 운영의 투명성 정도 : 적정 - 창원산업진흥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, 위탁사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정산하므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음
⑦ 책임행정의 보장성	◦ 행정의 연속성, 신뢰성 보장 등 - 창원산업진흥원은 공기관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 가능 ◦ 위탁·대행기관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(평가) 결과 : 적정

□ 심의요청 사항

❍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사무를 공공기관 위탁·대행 사무로 선정해 (재)창원산업진흥원에 2년간 위탁·대행함

□ 향후계획

❍ 위탁대행사업비 예산 편성 : 2027년 본예산

❍ 위수탁·대행 계약 체결 : 2027년 1월 中

❍ 위수탁·대행 업무 개시 : 2027년 1월 ~ 2028년 12월

□ 기대효과

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·청년 연계로 정부 정책 시너지 효과

❍ 청년 역외유출 방지 및 장기고용을 통한 숙련인력 성장 지원

붙임	관련법령

□ 「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」 제5조(사업) 및 제17조(업무의 위탁)

제5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2. 중소·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친화 정책 개발

나. 지원 사업의 기획, 수행, 평가 및 사후관리

제17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전략산업 및 중소·벤처기업의 효율적 육성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전략산업 및 중소·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사업의 일부

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며,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)

제6조(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)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3.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의회 동의)

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·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최초 위탁·대행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경우
2.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·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
3. 특정 공공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4. 법령과 조례에 수탁·대행기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
5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경우
6. 연간 위탁·대행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
7. 일회성 또는 단순 반복성 사무로서 위탁·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
8. 재난·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

1. 위탁·대행 사무명
2. 위탁·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
3. 위탁·대행 사무의 내용
4. 위탁·대행 시설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
5. 위탁·대행 기간
6.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
7.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
8. 그 밖에 위탁·대행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1. 위탁·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
2. 위탁·대행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
3. 그 밖에 위탁·대행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